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한온시스템 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상법 제393조의2와 한온시스템(이하 "회사")의 정관 제40조의2 제1항 다호 및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로부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관한 승인권한을 위임 받은 내부거래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 권한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① 위원회는 규정 제 7조에 열거한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거래의 주요내용, 계약 방식 및 거래상대방 선정 기준, 세부 거래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 장 구성

제 4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주재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부의사항)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라.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마. 기타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행위
 - 2. 그 밖의 법령 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
-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에서 한도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의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8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 (결의통지)

-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 ② 통지를 받은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10 조 (의사록)

- ①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자료의 보존

제 11 조 (자료보존 대상거래 및 보존기간)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 등 회사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해당 계약의 효력이 최종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존한다.

제 5 장 보칙

제 12 조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25. 03. 3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